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61
----------	------

발의년월일 : 2017년 2월 16일

발 의 자 : 박기열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만, 김동욱, 김영한,
김인호, 김진철, 김희걸,
맹진영, 서윤기, 신원철,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최관술 의원(13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소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함은 물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다.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도 붙임)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의 지원
3. 소질 및 적성개발,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의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